

##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07. 3. 28.

행정자치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3월 12일

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258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 
(2007. 3. 22)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 · 토론, 심사의결  
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)

### 1. 제안이유

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나. 정기적인 지역간 불균형 실태 조사 및 활용 등(안 6조)
- 다.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종합적인 평가(안 9조)
- 라.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(안 제10조)
  - (1)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안정적, 지속적, 재정적으로 지원
  - (2)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
- 마. 균형발전 “연구전담팀” 및 “지역협력단” 구성·운영(안 제15조)
  - (1) 공공연구기관에 연구전담팀을 설치하여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연구
  - (2) 공공연구기관에 지역협력단을 설치하여 평가 및 컨설팅 실시

## III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자치전문위원 연기봉)

### 가. 제정취지 및 경과

본 제정조례안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‘균형발전’을 바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, 법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150만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 내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음

## 나. 타 시도의 사례

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부산광역시, 그리고 도 단위에서는 충청남도에 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, 이상 4개 시도의 조례와 우리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광역시와 도(충남, 충북)는 면적, 인구, 밀집도 등 환경의 차이가 있는 만큼 구별점이 있음

### (1) 광역시의 경우

- 뉴타운 건설, 도심·부도심개발 등 시가지 개발사업에 중점 (도시인프라 측면)

### (2) 도의 경우(충남, 우리도)

- 상대적 낙후시군에 대한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중점 (발전잠재력이 있는 소프트산업 육성 측면)

※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조

## 다. 종합의견

이상의 제정취지 및 경과, 타 시도 사례조사 검토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,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

또한,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, 타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,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, 지역협력단 구성 운영 등 우리도의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타 시도의 조례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다만, 타 시도의 경우 그 재원에서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의  
도 배정분의 10%이내,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 등  
본 조례안의 재원보다 광범위하게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,  
본 조례의 효과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 
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
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각 시군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,  
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,  
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심의절차를 추가하여 계획의 민주적  
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
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

붙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타 시도 사례조사 · 검토

#### 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**

#### **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**

#### **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### **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#### **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### **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**

-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타 시도 사례조사 · 검토
-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

## &lt;참고자료&gt;

**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타 시도 사례 조사·검토****□ 조사 및 검토내용**

-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유무
- 조례의 세부항목에 대한 비교

**□ 조사 및 비교결과**

## 가.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있는 시도

- (1) 광역시 : 3개 광역시 (서울, 인천, 부산)
- (2) 道 : 1개 道 (충남)

## 나. 항목별 비교

- (1) 일반사항 비교

구 분	조례명	조례 제정일	추진체계(계획명)	관련위원회명
우리도 (조례안)	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	의회 심의중	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(5년)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(1년)	(지역혁신협의회)
충 남	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	2007.3.8	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(5년)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(1년)	지역균형발전위원회
서 울	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조례	2003.3.15	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(5년) 도시균형발전시책반영(1년)	지역균형발전위원회
인 천	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	2005.7.25	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(5년) 도시균형발전시책반영(1년)	도시균형발전위원회
부 산	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	2006.5.10	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(5년) 도시균형발전시책반영(1년)	도시균형발전위원회

## (2) 핵심사항 비교

구 분	지원대상지역 선정 등 계획수립 절차	지원방법상 특색	재 원
우리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지사가 지역간 불균형실태 조사</li> <li>○ 시장·군수 의견수렴</li> <li>○ 위원회 심의</li> <li>○ 도지사 확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</li> <li>○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</li> <li>○ 지역협력단 구성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</li> <li>· 도 보통세 징수액의 5%이내</li> <li>· 전입금, 기타 수입금</li> <li>· 차입금</li> </ul>
충 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지사가 시군별 발전수준 분석</li> <li>○ 시장·군수 의견수렴</li> <li>○ 위원회 심의</li> <li>○ 도지사 확정</li> </ul>	특별한 규정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</li> <li>· 균특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%이내</li> <li>· 도 보통세 징수액의 5%이내</li> <li>· 국고보조금</li> <li>· 전입금, 기타수입금, 차입금</li> </ul>
서 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장·구청장의 기초조사</li> <li>○ 위원회 심의</li> <li>○ 시장의 사업지구 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</li> <li>○ 금융지원, 지방세 감면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개발특별회계</li> <li>○ 중소기업육성기금</li> <li>○ 재정투융자기금</li> <li>○ 보조금, 차입금</li> </ul>
인 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장·구청장 요청</li> <li>○ 위원회 심의</li> <li>○ 시장의 사업지구 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지구 지정</li> <li>○ 금융지원, 지방세 감면 용적율 완화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개발특별회계</li> <li>○ 교통사업특별회계</li> <li>○ 지역개발기금</li> <li>○ 중소기업육성기금</li> <li>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</li> <li>○ 기타 차입금, 보조금 등</li> </ul>
부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장·구청장 지정 신청</li> <li>○ 위원회 심의</li> <li>○ 시장의 사업 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지정</li> <li>○ 지방세 감면, 용적율 완화</li> <li>○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 배치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통사업특별회계</li> <li>○ 지역개발기금</li> <li>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</li> <li>○ 기타 차입금, 보조금 등</li> </ul>

##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**지역균형발전**”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**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**”이라 함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**낙후지역**”이라 함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.

**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 
②시·군은 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근 시·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권역별 발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.

###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등

**제4조(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)** ①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
2.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
3. 지역별,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.

④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관련 시장·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

**제5조(시행계획 수립)** 도지사는 제4조 1항에 의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불균형 실태조사)**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불균형실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)** ① 중장기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·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와 해당 시장·군수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·점검)**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의거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)** ① 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다.

② 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시·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

**제10조(특별회계의 설치)**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용한다.

**제11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**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
2. 일반회계 등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
3. 차입금

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
2.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
3.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
4. 예비비 등

**제12조(세출예산의 차등지원)**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·군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의한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,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2 이상의 낙후지역 시·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.

**제13조(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)** 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제4장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등

**제14조(위원회 설치)** ① 지역균형발전 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이 위원회는 「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설치된 “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”로 대체할 수 있다.

**제15조(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)** ①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(이하 “연구전담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 
 ② 연구전담팀은 설치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, 권역내의 대학교수, 전문가, 공무원, 의회 의원,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 
 ③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, 추진과정,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 
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16조(준용)**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방안에서 낙후도가 음(-)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원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.

## 관 계 법령 발 쥐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5조 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국가균형발전특별법

**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재정법

**제33조 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